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 < SITE 1 >

## [남부도로사업소 제설전진기지 조성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18.02.26 (월)

□ 조치결과

◆ 점검자 : 윤원섭, 함창록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건설기계 안전</p> <p>- 창고부지내 양중작업 중인 카고크레인에는 아웃트리거의 받침목을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중으로 전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VI.전도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</p>		<p>2018.02.26</p> <p>지적 이후 카고크레인 작업중에는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고 작업하고 있음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창고부지내 사용중인 일자형사다리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상부에 60cm 이상의 여장길이 확보 및 고정하고 사다리의 기울기는 75° 이하를 준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4(일자형 사다리)</p>		<p>2018.02.27</p> <p>창고부지내 사용중인 일자형 사다리를 상부에 여장이 60CM 있는 것으로 교체하였고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설치하였음</p>	
<p>○ 품질관리</p> <p>- 창고부지 되메움용 토사는 암브력이 없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.</p>		<p>2018.02.27</p> <p>창고부지 되메움용 토사에 있던 암브록을 제거하여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하였음</p>	

○ 품질관리

- 창고부지 뒷면 옹벽배면에 설치된 Drain Board재의 부직포가 탈락 및 일부 손상되어 배수기능 불량에 예상되니 되메우기전 정비를 하여 원활한 배수기능이 되도록 할 것.



2018.02.28

창고부지 뒷면 옹벽배면에 설치된 Drain Board 부직포의 탈락부 및 손상된 부재작업을 통하여 온전히 부착하였음

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 <SITE 2>

## [남부도로사업소 제설전진기지 조성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2.26 (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 함창록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사무소 부지내 사무실동 외부계단 좌, 우측 단부는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보완하여 설치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1(안전난간)</p>		<p>2018.02.28</p> <p>사무소부지내 사무실동 외부계단 좌,우측 단부 안전난간을 보완하였음</p>	
		<p>2018.02.27</p> <p>사무소 부지내 사무실동 진출입로에 가설통로용으로 설치된 작업발판을 제거하였고 계단형 철제 제품으로 교체하였음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사무소 부지내 사무실동으로의 진출입은 근로자의 전도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설통로로 작업발판 사용을 지양하고 규격에 적합한 가설계단 또는 가설경사로를 사용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2(작업발판 및 계단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3(가설경사로)</p>		<p>2018.02.27</p> <p>사무소 부지내 사무실동 진출입로에 가설통로용으로 설치된 작업발판을 제거하였고 계단형 철제 제품으로 교체하였음</p>	
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현장내 위험물 보관소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치요망</p> <p>① 관리책임자(정/부) 성명, 전화번호, 보관 물 품명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지판 부착 관리</p> <p>②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 안전보건자료(MSDS) 게시</p> <p>③ 외부에 소화기 설치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(위험물 등의 보관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</p>		<p>2018.02.28</p> <p>위험물보관소 관리책임자 및 품명, 수량 기재 표지판 부착하였고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게시하였음 그리고 외부에 소화기 설치 하였음</p>	
<p>○ 중량물취급 안전</p> <p>- 사무소 부지내 항공마대는 인양시 손상이 우려되는 내용물(철근 등 날카로운 내용물)은 적재를 금지하고, 마대용량의 90%미만으로 적재 요망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4(항공마대)</p>		<p>2018.02.27</p> <p>사무소 부지내 항공마대는 여분의 마대를 준비하여 철근 등 날카로운 내용물 제거하였고 마대용량의 90%만 적재 하였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사무소 부지내 차량진, 출입로 부분은 현장내 토사가 도로에 침범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요망</p>		<p>2018.02.28</p> <p>사무소 부지내 차량진, 출입로 토사침범부 토사 제거하였고 물청소를 하였음</p>	